

“제조물책임(PL)법”이란 무엇인가?

<편집부>

제조물책임법은 추미애 의원을 비롯한 91명의 국회의원이 1999년 11월 5일 국회에 제출한 「결합제조물책임법안」이 1999년 12월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제조물책임법’으로 확정되었다.

그 후 정부에 이송되어 2000년 1월 12일 공포되었고,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제조물책임법의 의의

1. 제조물책임의 개념

제조물책임이라 함은 “제조물 즉, 자동차, 가전제품, 식품·의약품 등의 공업적인 제조·가공을 거친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소비자·이용자 또는 제3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판매업자 등 그 제조물의 제조·판매에 관여한 자가 지게 되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제조물책임은 미국에서 발전한 결합제조물에 관한 법적 책임이며, Product Liability(이것을 줄여서 ‘PL 법’이라고 표현한다)의 우리말 번역이다. 제조물책임은 안전성이 결여된 결합있는 제조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 그 피해를 구제하여 주는 사후구제에 관한 법적 책임인 것이다.

즉, 제조물에 결함이 있고 그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제조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조물의 결합책임을 말한다. 또한 제조물책임법에서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결합의 존재와 손해의 발생 그리고 결합과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모두 소비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조물책임법에 대하여 기업에서 오해하고 있는 면이 있다. 마치 제조물책임법에서는 기업이 무한책임을 지게 된다거나 또는 기업이 모두 입증책임을 지게 된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은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이유여하를 묻지 않고 무조건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절대책임은 아니며, 결함이 없는 한 책임을 지는 일은 결코 없다. 또한 입증책임도 소비자에게 있는 것이지 제조업자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제조물 관련사고의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제조업자에게 청구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하(우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에서는 제조업자의 과실(주의의무의 태만)을 입증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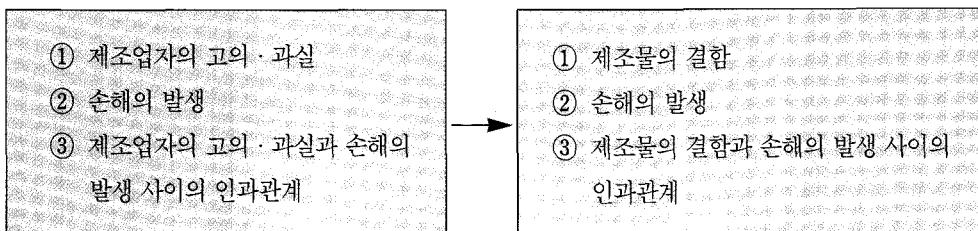
그러나 제조물의 제조기술이 고도화되고 복잡화됨에 따라 피해자가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한다는 것은 곤란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한다는 측면에서 제조업자의 과실이라는 주관적인 요건을 제조물의 결함이라는 객관적인 요건으로 변경함으로써 소비자피해를 보다 쉽게 구제하는데 그 목적 있다.

결합제조물의 피해자(소비자)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현행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①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②손해 ③손해와 고의 또는 과실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만 된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①제조물의 결함 ②손해 ③제조물의 결함과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한다.

즉 주관적인 「고의 · 과실」의 요건이 객관적인 제조물의 「결함」으로 전환된 것이다. 따라서 제조물에 객관적으로 나타난 「결함」이 있으면 제조업자의 주관적인 요소인 「고의 ·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지게 된다는 의미에서 「무과실책임」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함」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표 1〉 민법의 책임요건과 제조물책임법의 책임요건 비교



제조물책임법의 입법이 가져올 소비자에 대한 영향은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신속하고 실효성있게 구제를 받겠지만, 무엇보다도 기업에 대한 영향은 제품안전에 철저를 기하여 제품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제조물책임법은 소비자와 기업의 결합제품으로 인한 분쟁을 해결해 주는 기준이 된다. 현재와 같이 ‘과실의 입증’이라는 기준의 불명확으로 인하여 소비자와 기업간의 소모적인 분쟁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이제 이 제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관심의 초점을 맞추어 발등에 떨어진 제조물책임대책을 마련하는데 서둘러야 할 것이다.

제조물책임법이 미치는 영향

1. 긍정적인 영향

(1) 제조물의 안전성 강화

제조물책임법의 입법은 전체적으로 제조물의 안전성이 강화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제조물책임은 제조물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예방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리콜제도와는 다르다. 리콜제도가 결함제조물로 인한 위험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사전에 예방하는 목적이 있다면 제조물책임은 사후적인 피해구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기능을 한다.

즉 제조물을 제조 · 판매함에 있어서 사후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여부를 고려 · 검토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조물의 개발 · 제조 · 표시 · 겸사 등의 과정에 있어서 「제조물의 결함」의 존재여부 등의 여러가지 문제를 둘러싼 제조물책임의 성립여부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PL특집 1 】

〈표 2〉 제조물책임(PL)제도와 리콜(Recall)제도의 비교

구분	제조물책임(PL)제도	리콜(Recall)제도
성격	· 민사적 책임원칙의 변경	· 행정적 규제
기능	· 사후적 손해배상책임을 통해 간접적인 안전확보	· 사전적 회수를 통해 예방적 · 직접적인 안전확보
근거법	· 제조물책임법	· 소비자보호법, 자동차관리법, 식품위생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요건	①제조물의 결함 ②손해의 발생 ③결함과 손해와의 인과관계	① 제조물의 결함으로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②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또한 제조물책임 하에서는 「제조물의 결함」이라는 객관적이며 일반인이 판단하기 쉬운 요건으로 배상책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제조업자가 쉽게 사후예측을 하게 되고 제조물의 안전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제조물책임은 제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리라고 생각된다. 한편 규제완화, 자기책임이 중시 · 강조되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제조물의 개발 · 제조 · 판매의 기준을 제조업자가 스스로 설정할 필요가 있지만 제조물책임법이 그러한 제조물의 안전대책상의 기준을 제공하게 된 것이다. 제조업자의 자기책임에 의해 제조물의 안전대책이 실시되는 것은 제조물사고를 방지하는 가장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제조물책임법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안전확보기준을 사회에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2) 소비자보호의 중심

소비자입장에서 보면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사고피해에 대한 구제를 용이하게 하는 점에서 소비자보호가 충실히 해지게 되며, 결함을 책임요건으로 함에 따라 분쟁해결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재판상 · 재판외에서 분쟁해결이 촉진된다. 제조물책임은 실체법상의 관점에서 보아 손해전보기능 등의 여러가지 기능을 가지지만 분쟁해결이라는 사회제도 · 절차법상의 관점에서 보면 제조물사고에 기인하는 분쟁의 해결을 촉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제조물책임법에 의해 인정된 제조물책임은 그 법적인 성질이 민사실체법이지만 ①제조물의 객관적인 성질인 「제조물의 결함」을 책임요건으로 함으로써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점 ②주관적인 요건인 「제조업자의 과실」의 판단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곤란을 해소하고 제조물사고에 있어서 손해배상책임의 법적인 안정을 확보하는 점 ③「제조물의 결함」의 판단기준은 결국 사회적인 상식, 사회통념에 의하게 되므로 재판외에 있어서 법관이 아니더라도 상식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점에서 분쟁해결의 절차적인 면에 있어서도 여러가지 특징이 있다.

제조물책임에 수반되는 이러한 특징은 제조물사고에 관한 분쟁을 적절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에 이 특징을 살려서 제조물책임제도를 운용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은 소비자단체 · 언론의 홍보로 지금까지 입증의 곤란으로 구제받지 못한 클레임 · 소송건수가 증가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오히려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기회를 주게되어 궁금

적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지나친 소송남발(濫訴)에 의한 제조물책임소송의 급증·보험료의 고액상승·그에 따른 기업도산 등의 이른바 PL위기가 있었지만 우리나라에는 소송제도와 사회환경이 미국과 다르기 때문에 미국식의 PL위기가 초래될 우려는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3) 기업의 경쟁력 강화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도 제품안전대책이 기업경영의 중요 관심이 되므로 보다 안전한 제품생산과 판매 경쟁으로 소비자는 안전한 제품을 사용하게 되고, 기업은 경쟁력이 강화된다.

제조물책임법의 도입에 의해 기업은 결합제품을 시장에 내놓지 않게 되고, 만일 결합제품을 시장에 내어 놓았을 경우에는 제조물책임법에 의거해서 정확한 구체를 신속하게 행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들은 단순히 제조물책임의 방어(PLD)라고 하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제품사고를 방지하는 제품안전(PS)과 이것을 통한 고객만족(CS)을 목표로 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몰두해야 할 과제이다. 긍정적으로는 기업이 제품안전에 철저를 기하게 되어 제품경쟁에 우위를 가지는 효과도 있다.

제조물책임제도의 도입에 의해 제조물의 제조·판매에 있어서 제조물의 구입자(소비자)의 「제조물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제조업자에 있어서도 「안전한 제조물」이 중요한 세일즈포인트로 되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가 같은 제조물 중에서 제조물을 구입할 때 선택할 요소로서 「제조물의 안전성」이 높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제조물의 호화성」, 「제조물의 다양성」, 「제조물의 사용편리성」보다는 「제조물의 안전성」에 제조업자의 관심이 높아지게 된다. 안전한 제조물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예컨대 「PL」이라는 마크나 「제조물책임대응상품」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이용되는 경우도 있게 될 것이다.

제조물책임에 합치된 제조물을 제조·판매하지 않으면 제조물이 경쟁에서 타격을 입어 판매할 수 없게 되는 사태도 쉽게 예상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제조물책임은 제조물의 개발·판매에 있어서 경쟁을 촉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2. 부정적인 영향

제조물책임법 제정과 그에 관한 매스컴 등의 빈번한 보도로 제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문제의식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제품사고 클레임건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된 1995년 7월에 상담과 불만제기건이 두 배로 증가한 경우가 있다.

제조물책임법 제정을 계기로 제품안전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는 것에 편승하여 기업에 대하여 제조물책임을 걸어 매스컴 등에 폭로를 악용하여 무리한 보상을 강요할 우려도 예상되지만, 일본 정부가 PL법을 제정하면서 야쿠자와 같은 범죄집단이 PL법을 악용하여 제품의 사소한 결함을 트집잡아 거액의 손해배상을 받는 새로운 자금원으로 이용할 가능성을 우려하였으나 현재까지 그러한 우려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은 당사자인 기업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며, 특히 제조원가의 부담, 인력자원의 낭비, 신제품개발 지연 및 기업이미지의 실추 등을 들 수 있다. ◉

- 자료협조 : 한국PL법 연구원 등